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8.7.3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복합시설 신축공사 / 영등포구 여의도동 31		
의결번호	2018-14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			
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경관법』 제28조 및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경관·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			
< 건축 분야 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			
○ 향후 경전철 연결 등 일반인들의 이용을 고려한 공개공지(침상형) 및 관련 상업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시 반영하기 바람.			
○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은 우수디자인 항목을 적용하여 30% 완화 인정함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			
○ 공동주택 기준층 평면에서 코어를 구분하는데 설치된 방화문은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개방시 제연설비 가압에 의해 문이 개방되어 차압이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방방향을 반대로 변경 바람.			
< 공통사항 >			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			
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주거 최우수(그린1)등급 이상, 비주거 최우수(그린1)등급 이상			
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 1등급, 비주거 1+등급 적용			
다.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.5%, 비주거 18.24% 적용			
- 계속 -			

2018. 7. 3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8.7.3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복합시설 신축공사 / 영등포구 여의도동 31		
의결번호	2018-14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 < 공통사항 >(계속)			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.			
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			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			
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			
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			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			

2018. 7. 3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